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2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윤영석·박덕흠·김태호

조경태 · 서일준 · 정희용

박대출 • 백종헌 • 정동만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제24호의 경우에는 대수선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허가나 신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생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	⑤
으면 다음 <u>각 호</u> 의 허가 등을	<u>각 호(제24호의 경우</u>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에는 대수선에 관한 건축허가를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	
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24.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의 해체 허가나 신고
⑥ ~ ⑪ (생 략)	⑥ ~ ① (현행과 같음)